

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	2000. 12. 28	규칙 제 781호
개정	2002. 1. 29	규칙 제 800호
	2002. 12. 11	규칙 제 813호
	2005. 12. 30	규칙 제 871호
	2008. 6. 16	규칙 제 93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일부개정	2014. 7. 11	규칙 제1078호(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	2020. 3. 25	규칙 제1227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2조(업무대행의 신청)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 12. 11>

1. 이력서
2. 면허·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(의사면허증, 간호사면허증, 전문의 자격증, 가정간호사자격증 또는 정신간호사자격증 등을 말한다)
3. 제2호의 관계서류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.

제3조(계약)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의료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대행업무의 범위, 계약기간, 업무대행경비, 업무대행자의 의무, 업무대행장소, 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제4조(업무대행경비의 지급) ① 의료업무대행자에게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되,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. <개정 2002. 12. 11, 2005. 12. 30>

② 의료업무대행자에게는 총액연봉을 12개월로 균등 지급한다. <개정 2002. 12. 11, 2005. 12. 30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

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 <개정 2005. 12. 30>

④ 의료인 업무대행 경비 지급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02. 12. 11>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성과급여의 최초 지급시기)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여는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 <2002. 1. 2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02. 12. 1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05. 12. 30>

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규칙 제93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7. 11 규칙 제1078호, 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3. 25 규칙 제1227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